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2서식] <신설 2024. 2. 15.>

( )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

① 입회 희망일 (년/월/일)	. . .			
신청인 정보	② 성명		③ 생년월일	. . .
	④ 주소	(전화번호:)		
근거법령	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9조제1항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			

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입회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평택 가재지구 3블럭 공동주택 효성중공업(주) 귀하

첨부서류	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
※ 측정결과는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(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,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,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)에 공고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